

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길영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46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2월 09일
발 의 자: 김길영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영옥, 김영철, 김용호,
김원태, 김태수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
유만희, 윤기섭, 윤종복,
이상욱, 이성배, 임춘대,
정지웅, 최민규, 허·훈,
홍국표, 황유정 의원(20명)

1. 제안이유

- 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62조 과소토지 기준면적에 대한 조례위임 사항이 개정·삭제됨에 따라 조례상 과소토지 기준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
- 사업시행자가 인계하여야 할 서류 및 도면의 제출 형식을 마이크로 필름 및 CD-ROM 등 구시대적 매체로 한정하고 있어 전자적 저장 매체로 현행화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도시개발법 조례 위임사항 소멸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(안 제6조)
- 나. 도시개발사업 완료·폐지 시 인계자료 제출방식의 현행화(안 제26조제1항제3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개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.

3. 관계서류 인계용 외부저장장치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과소토지의 기준) 영 제62조제2항의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9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.</p>	제6조<삭 제>
<p>제26조(관계서류의 인계) ①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인계하여야 할 서류 또는 도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3. 문서용 16밀리미터 롤 마이크로필름(Roll Microfilm) 및 도면용 35밀리미터 롤 마이크로필름(Roll Microfilm)</p> <p>4. 문서 및 도면용 콤팩디스크(CD-ROM)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26조(관계서류의 인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관계서류 인계용 외부저장장치</p> <p>4.<삭 제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「도시개발법」 시행령 제62조 과소토지 기준면적에 대한 조례위임 사항이 개정·삭제됨에 따라 조례상 과소토지 기준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도시개발사업 완료·폐지 시 사업시행자가 인계하여야 할 서류 및 도면의 제출 형식을 전자적 저장매체로 현행화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, 자구수정 등 조문정비에 해당하여 별도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김 경 명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imkmi0809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